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4.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석의원)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손을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등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면서, **이용우·서영석의원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고 있고, **서영석의원안**은 난임치료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규정(제76조의2제1항)에 난임치료휴가·휴직을 추가하려는 것임. 각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이용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인요한의원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1) 이용우의원안(제3572호), 서영석의원안(제3718호), 정춘생의원안(제3839호), 인요한의원안(제4060호)

현 행	이용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인요한의원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
1.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을----------.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현 행	이용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인요한의원안
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2 ---------- 기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	2.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로----------.		
<신 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지급기간은 최초 15일로 한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30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

현 행	이용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인요한의원안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유산·사산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 기간 중----------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	제77조(준용) ① ----------	제77조(준용) ① ----------	제77조(준용) ① ----------	제77조(준용) ① ----------

현 행	이용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인요한의원안
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 ---------- ---------- ---------- ----------. - ---------- ---------- ---------- ---------- ---------- ---------- ---------- ---------- ---------- ----------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	---------- ---------- ---------- ----------. ------ ---------- ---------- ---------- ---------- ---------- ---------- ---------- ---------- ---------- ----------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직"으로-----.	---------- ---------- ---------- ---------- ----------. - ---------- ---------- ---------- ---------- ---------- ---------- ---------- ---------- ---------- ----------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	---------- ---------- ---------- ---------- ----------. - ---------- ---------- ---------- ---------- ---------- ---------- ---------- ---------- ---------- ----------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을 확대하고 있고, 서영석의원안은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있음.

[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휴가기간 (유급)	고보기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현행	10일	5일
이용우의원안	20	휴가기간
서영석의원안	30(다태아 40일)	휴가기간 대규모기업: 15일(다태아 20일)

구분	난임치료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휴가기간	유급기간	고보기금 지원	
현행	3일	1일	0일	
이용우의원안	10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정춘생의원안	60일	30일	30일	
인요한의원안	30일	10일	10일	
서영석의원안	30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15일	대규모 기업
	휴직 신설(1년 이내)	-	휴직기간	모든 기업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었고(안

제75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휴가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으므로, 확대된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제도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고용보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법률(시행일: 2025. 2. 23.)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③ (생 략)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③ (생 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